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관한 관련 규정

1. 産業安全保健法 遵守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대 분류	내 용	분류 번호	내 용	
00	법령게시 (法第11條)	0001	법 및 명령의 요지를 상시 비치 또는 게시 여부	
	안전표지 (法第12條)	0002	위험한 시설,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표지 부착 또는 설치 여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法第13條)	0003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 선임 후 7일 이내에 선임 보고 여부	
	관리감독자 (法第14條)	0004	관리감독자가 할 업무 수행 여부	
	안전담당자	0005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장에서 안전담당자 선임지정 여부	
	안전관리자 (法第15條)	0006	안전관리자 선임 후 7일 이내 선임보고 여부	
		0007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0008	공사금액 20~500억원 안전관리자 1인 선임 여부	
		0009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매 500억원 추가시마다 안전관리자 1인 씩 추가선임 여부	
	(令第15條)	0010	안전관리자의 자격 적정 여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法第18條)	0011	하도급에 의한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때 안전보 건총괄책임자 지정 여부	

자 료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대 분류	내 용	분류 번호	내 용		
00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法第19條)	0012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여부	
	안전보건 관리규정	(法第20條)	0013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일 때,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14일 이내 신고 여부	
		(法第21條)	0014	작성 및 변경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첨부 신고 여부	
		(法第22條)	0015	사업주 및 근로자의 규정 준수 여부	
	안전상조치	(法第23條)	0016	추락 붕괴 등 위험발생 예상장소에 대한 필요한 안전조치 여부	
근로자 준수 사항	(法第25條)	0017	근로자의 안전상의 조치 준수 여부		

2. 安全基準에 關한 規則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분류 번호	내 용	분류 번호	내 용		
00	작업중지등	(法第26條)	0018	중대재해 또는 위험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작업중지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재개 여부	
	협의체구성	(法第29條)	0019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 적정 여부	
	안전관리비	(法第30條)	0020	안전관리비의 적정계상 및 적정사용 여부	
	안전교육	(法第31條)	0021	안전교육시간 등 교육의 적정 여부 정기교육 : 매월 2시간, 채용시 교육 : 1시간, 특별교육 : 2시간	
	교육이수	(法第32條)	0022	관리책임자의 안전직무교육 이수 여부	
	방호조치	(法第33條)	0023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설치 또는 사용 여부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대 분류	내 용	분류 번호	내 용	
00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法第48條)	0024	교량, 터널, 댐, 굴착공사의 착공 30일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01	안전기준			
	1. 작업장 추락방지	規則第8條	0101	작업장 발판 통로 개구부 등 추락위험장소 방책 설치 여부
	붕괴방지	規則第8條2	0102	구조물이 하중 풍압 등의 위험시 안전진단 후 위험방지조치 여부
	낙하위험	規則第9條	0103	작업장 통로 등의 낙하물의 위험에 대한 보호망 설치 여부
	2. 통로			
	통로설치	規則第14條	0104	안전통로 표시 및 항상 사용가능 여부
	통로조명	規則第15條	0105	정상적인 통행에 필요한 채광 조명 여부
	옥내통로	規則第16條	0106	높이 2M 이내 장애물과 넘어질 위험 여부
	통로구조	規則第17條	0107	가설통로는 견고한 구조로서 경사 15도를 초과할 때에는 미끄럼 막이 설치, 경사 30도 이하일 것. 높이 90CM에 상부난간대, 45CM에 중간대 설치 여부, 수직갱 15M 초과시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M 이내 계단참 설치 여부
	사다리통로	規則第20條	0108	견고한 구조, 벽과의 적당한 간격, 轉位방지 조치. 사다리 상단에서 60CM 이상 올라갈 것, 갱내 사다리식 통로가 10M 이상일 때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구배는 80도 이내인지 여부
	갱내통로	規則第21條	0109	갱내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되어 접촉위험이 있을 때 판자벽 기타 위험방지 격벽 설치 여부
3. 계단				
계단의 강도	規則第23條	0110	계단 및 계단참은 500kg/m ²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안전을 4 이상인지 여부	
계단의 폭	規則第24條	0111	계단의 폭은 1M 이상, 계단에는 다른 물건 등의 설치 또는 적재 금지 여부	

자 료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대 분류	내 용	분류 번호	내 용	
01	계단참높이	法則第25條	0112 계단참의 높이는 3.7M 이내, 중간 계단참은 가로 세로 각 1M 이상인지 여부	
	계단의 난간	規則第27條	0113 목재난간은 5cm ² 이상, 금속파이프의 직경 4CM 이상이며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난간지주는 2M 이내인지 여부	
	4. 보호구 보호구 지급관리	規則第28條 ~ 規則第31條	0114 보호구를 근로자수 이상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며 상시 사용할 수 있게 청결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는지 여부	
	보일러사용	規則第80條 ~ 規則第85條	0115 보일러의 압력방출장치는 1일 1회 이상 작동상태를 점검하며, 1년 1회 이상 표준압력계에 의한 시험 봉인하는지 여부	
	양중기	規則第100條	0116 양중기의 정격하중 표시, 후크 해지장치 부착, 화물 아래쪽에 근로자 출입금지 여부	
	5. 전기기계 기구 방호	規則第327條	0117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폐쇄형 외함, 절연덮개 설치, 관계자 이외 출입 금지되는 장소 설치 여부	
	접지	規則第328條	0118 누전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접지 설치 여부	
	감전방지	規則第329條	0119 습윤장소, 높은 장소에서의 전동기계기구 사용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접속, 접지극에 접지 여부	
	임시전등	規則第331條	0120 감전 및 전구파손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접촉이 어렵고 변형되지 않는 보호망 부착 여부	
	조명	規則第332條	0121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의 감전 및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照度 유지 여부	
	절연피복	規則第338條	0122 작업 및 통행으로 인하여 접촉할 위험이 있는 이동전선의 절연 피복 손상 노화로 인한 위험방지조치 여부	
	통로전선	規則第340條	0123 통로바닥에 이동전선 설치 사용 금지 여부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대 분류	내 용	분류 번호	내 용	
01	시설물 건설작업시 감전 방지	規則第352條	0124	가공전선 또는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건설, 해체, 점검, 항타, 펌프카, 크레인 작업시 충전전로 이설, 감전방지 대책, 절연용 방호구 설치 또는 감시인에 의한 감시 여부

3. 建設作業에 依한 危險豫防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대 분류	내 용	분류 번호	내 용	
02	1. 거푸집 지보공 안전조치	規則第363條	0201	갈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0202	개구부 상부에 지주를 설치할 때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 사용 여부
			0203	지주의 상하고정, 미끄러짐 방지조치,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하는지 여부
			0204	지주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동질재료 사용 여부
			0205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보울트, 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 여부
			0206	曲面거푸집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으로 거푸집의 浮上방지 조치 여부
			0207	지주로 사용하는 강관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변위방지, 보를 상단에 올릴 때 강관상단에 강재단판을 부착하여 보에 고정시키는지 여부

자 료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대 분류	내 용	분류 번호	내 용	
02	지보공 안전조치	規則第363條	0208	지주로 사용하는 파이프 받침에는 3분 이상 이어서 사용금지, 이어서 사용시 4개 이상의 보울트 또는 전용철물 사용, 높이가 3.5M 이상일 때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변위방지 여부
			0209	지주로 사용하는 강관들에는 틀과 틀 사이에 교차가새 설치, 최상층 5층 이내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설치 및 변위방지,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 교차가새방향으로 띠장틀 설치, 보를 상단에 올릴 때 강관틀 상단에 강재단판을 부착하여 보에 고정시키는지 여부
			0210	지주로 사용하는 조립강주는 보를 상단에 올릴때 조립강주 상단에 강재단판을 부착하여 보에 고정시키고, 높이가 4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변위방지조치를 하는지 여부
			0211	지주로 사용하는 목재는 높이가 3.5M 이상일 때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변위방지하고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분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견고하게 묶은 후 상단을 보에 고정시키는지 여부
	거푸집 지보공 단상조립	規則第364條	0213	깔판 깔목 등을 끼워서 단상으로 조립하는 경우 거푸집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 외에 깔판 깔목을 2단 이상 끼우지 말고, 깔판 깔목을 이어서 사용시 단단히 연결하고 지주는 깔판 깔목에 고정시키는지 여부
			0214	지보공의 조립 해체시 작업구역내 관계자 이외 출입금지, 악천후시 작업중지, 재료 기구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 달포대 사용 여부
03	2. 비계 작업발판	規則第371條	0301	발판재료 및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작업시의 하중에 견딜 수 있게 견고한지 여부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대 분류	내 용	분류 번호	내 용	
03	달비계	規則第372條	0302	비계의 폭은 40CM 이상, 발판 재료간의 틈은 3CM 이하인지 여부
			0303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 설치 또는 작업상 필요 시 방망, 안전대 사용 여부
			0304	작업발판재료가 傳位 또는 탈락하지 않도록 2 이상의 지지물에 부착시켰는지 여부
			0305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 위험방지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0306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시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고 악천후시 작업중지 여부
			0307	작업시기 범위절차를 작업근로자에게 周知, 작업구역내 관계자 이외 출입금지,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지 여부
	점검보수	規則第374條	0308	비계재료의 연결 해체시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 사용으로 추락방지조치와 재료 기구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달포대 사용 여부
			0309	악천후 후 또는 조립 해체 변경 후 작업개시 전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상태,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및 부식상태, 손잡이의 탈락상태, 기동의 침하 변형 흔들림 상태, 로우프의 부착상태 및 흔들림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하는지 여부
	통나무비계	規則第376條	0310	비계기둥의 간격은 2.5M 이하, 지상으로부터 첫번째 띠장은 3M 이하에 설치 또는 쌓기등으로 보강 및 지상 12M 이하에서만 사용 여부
			0311	비계기둥이 침하하거나 미끄러짐 방지용으로 묻거나 깔판 사용 등의 조치 여부

자 료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대 분류	내 용	분류 번호	내 용	
03	강관비계 (단관비계)	規則第378條	0312	비계기등을 겸침이음시 1M 이상을 겹쳐 2개소 이상 묶고, 맞댄 이음시 쌍기둥틀로 하거나 1.8M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 4개소 이상 묶는지 여부
			0313	비계기둥 띠장 장선 등의 접속부 교차부는 철선 기타 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묶고, 교차가새로 보강하였는지 여부
			0314	외줄비계 쌍줄비계 돌출비계의 벽이음 및 버팀간격은 수직방향 5.5M 이하, 수평방향 7.5M 이하로 하고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사재설치 등 도괴방지 조치 여부
			0315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고, 작업방법절차를 작업근로자에게 周知시키는지 여부
			0316	비계기둥의 간격은 보방향 1.5M~1.8M, 간사이방향 1.5M이며, 지상 첫번째 띠장은 2M 이하에 설치 또는 쌍기둥틀에 의하여 보강 여부
			0317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M 되는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분의 강관으로 묶고,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0318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하고, 보틀 및 내민틀은 수평가새 등에 의하여 옆흔들림 방지조치 여부
			0319	높이 20M 초과 및 중량물 적재작업시 주틀은 높이 2M 이하인 것 사용, 주틀간의 간격은 1.8M 이하인지 여부
			04	굴착작업 작업장소 조 사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대 분류	내 용	분류 번호	내 용		
04	토석붕괴	規則第384條	0402	토석낙하의 위험방지에 안전담당자는 작업시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균열의 유무함수 응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 점검 여부	
	지반붕괴	規則第386條	0403	지반붕괴의 위험방지에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및 우천시 굴착사면 빗물 침투방지 조치 여부	
	매 설 물	規則第387條	0404	매설물, 콘크리트벽, 옹벽 등에 근접하여 굴착작업시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미리 건설물 보강 또는 이설조치하거나 매설물의 방호조치 또는 이설조치 여부	
	흙막이지보 공 조립도	規則第394條	0405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에 흙막이판, 말뚝, 버팀대 및 락재 등 부재의 배치 치수 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었는지 여부	
	붕괴위험	規則第395條	0406	<p>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재의 손상변형 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하는지 여부 	
	터널 지형	規則第400條	0407	터널굴착작업시 낙반, 출수 및 가스폭발 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 지질 및 지층상태의 조사결과를 기록 보존 여부	
	시공 계획	規則第401條	0408	지형조사결과에 따른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작업하는지 여부	
	낙반위험	規則第405條	0409	낙반위험 방지를 위하여 터널지보공, 록볼트 설치, 부석제거를 위한 필요한 조치 여부	
	출입구부근	規則第406條	0410	터널 출입구 부근의 지반붕괴 또는 토석 낙하위험에 대한 흙막이 지보공, 방호망 설치 여부	

자 료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대 분류	내 용		분류 번호	내 용	
04	소화설비	規則第414條	0411	터널작업에서 화기, 아아크, 배전반, 변압기,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장소에 소화설비 설치 여부	
	작업중지	規則第415條	0412	재해발생위험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周知시키는지 여부	
	터널지보공	規則第420條	0413	강아아치 지보공의 주재가 아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쉘기를 박는 등의 조치 여부	
0414			연결보울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하는지 여부		
05	추락방지 부착설비	規則第441條	0501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여부	
			0502	높이 또는 깊이가 2M를 초과하는 작업장소에 안전하게 승강할 승강설비 설치 여부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제외	
	구 명 구	規則第450條	0503	수상에서의 작업시 근로자가 수중에 전락하는 위험에 대하여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여부	
	울의 설치	規則第451條	0504	작업중 또는 통행시 전락으로 화상 질식위험이 있는 핏트 등의 장소에 높이 90CM 이상의 울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붕괴 방지 붕괴 낙하	規則第452條	0505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위험방지를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도로 하고 낙하위험이 있는 토석제거, 옹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0506	지반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원인이 되는 빗물, 지하수 등의 배제 여부	

구 분		점 검 항 목		비 고	
대 분류	내 용	분류 번호	내 용		
05	안전유지	規則第452條 의 2	0507 구축물 또는 시설물이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 전도 도괴 폭발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1. 시설물의 설계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2. 시설물의 시공시 건설공사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3. 건축물의 구조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등을 하는지 여부		
	안전성평가	規則第452條 의 3	0508 구축물 또는 시설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제거하는지 여부		
		規則第452條 의 3			1.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 작업 등으로 침하 균열발생으로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 또는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3. 구축물 또는 시설물에 설계 당시보다 과도한 중량이 부과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내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5. 오랜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6. 기타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계측장치	規則第454條	0509 터널작업시 붕괴 등으로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때에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위험방지조치 여부		
	투하설비	規則第455條	0510 높이 3M 이상의 장소에서 물체를 투하할 때 적당한 투하설비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 여부		
	낙하 비레	規則第456條	0511 물체가 낙하 또는 비레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방망의 설치, 출입 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